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2022. 10. 21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3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환경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
-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 변경(안 제11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11조, 제2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확대 적용하고, 환경계획수립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“생활환경”과 “환경오염”에 대한 범주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, 이를 위한 환경계획의 수립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제3조제3호 중 “소음·진동·악취”를 “소음·진동·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토양오염”을 “토양오염, 해양오염”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“인공조명”을 “인공조명”으로 정비함.
- 제11조의 제목 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”을 “(환경계획의 수립)”으로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”을 “위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

하며, 환경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계획” 을 “환경계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 을 “환경계획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종합계획” 을 “환경계획” 으로 정비함.

- 제27조의 제목 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 을 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 으로 정비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- 입법예고(‘22.10. 4.~‘22.10.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“생활환경” 과 “환경오염” 에 대한 범주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, 이를 위한 환경계획의 수립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에 따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소음·진동·악취”를 “소음·진동·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토양오염”을 “토양오염, 해양오염”으로, “인공조명”을 “인공조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”을“(환경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”을 “위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환경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종합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을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생활환경”이라 함은 대기, 물, 폐기물, <u>소음·진동·악취</u>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</p> <p>4. “환경오염”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<u>토양오염</u>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<u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</u>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1조(<u>환경보전계획의 수립</u>)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소음·진동·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</u>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토양오염, 해양오염</u>----- ----- <u>인공조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<u>환경계획의 수립</u>) ① ---- ----- ----- 위해 「<u>환경정책기본법</u>」에 따라 <u>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환경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</u>----</p>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도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·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도는 지역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7조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(생략)

② --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제27조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”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2. “자연환경”이란 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생활환경”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6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7. “환경용량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,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.
8.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
제18조(시·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)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도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

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삭제

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
⑥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시·도 환경계획 수립지침

제2장 시·도 환경계획의 기본원칙

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

2-1-2. (목표연도) 시·도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,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(예: 2030년, 2035년).

-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